

의안번호	제 351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윤 흥 창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6년 2월 24일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윤흥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1
----------	-----

발의연월일 : 2016년 2월24일

발 의 자 : 윤흥창,정영수,김양희,이광희,
이숙애,이종욱,임병운

1. 제정이유

도로교통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각급학교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내 교통 안전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교통안전 실태 조사를 통하여 교통 안전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 나. 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 다. 교내 교통 안전지도 및 교육(안 제4조)
- 라. 교내 교통안전 실태조사(안 제5조)
- 마. 지원(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1) 「교육기본법」 제17조의5
- 2)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 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나. 정책 토론회 등 공청회 :

다. 관계부서 협의 : 충청북도교육청 진로인성교육과 협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 2016. 1. 28. ~ 2. 20.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각급학교 내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학교 내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각급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는 교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내 교통안전지도 및 교육) 학교장이 학교 내 교통안전지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내 정기적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차량 통로 이외에는 운행 금지 제도
2. 학생들의 학교 내 통행 안전을 위한 지도
3. 학교 내 외부 차량 출입 통제를 위한 홍보활동
4.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학생들의 학교 내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5조(교내 교통안전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3조제1항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 교육기본법[법률 제13003호, 2015.1.20., 일부개정]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법률 제13226호, 2015.3.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2933호, 2014.12.30.,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법률 제10790호, 2011.6.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